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 요청서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려는 경우 해당 유통명령 요청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2025..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9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일간지”를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의 장부 및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2 제4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의 장부 및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수의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4호 중 “목적, 용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 전”을 “같은 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별표 8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8조의2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제8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 통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가목부터 사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의 장부·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유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2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화일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

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7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 ⑤ (생략)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u>이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u>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략) 4. ~ 8. 삭제	제9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u>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u>	<u><삭 제></u>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① (생략)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u>일간지</u> 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u>일간지 또는 홈</u> <u>페이지</u>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 ----- ----- ----- ----- <u>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제22조의4(재산 처분의 허가절차)
① 영 제13조의3에 따라 재산처 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처분의 <u>목적</u> , <u>용도</u> ,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 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 은 서류	4. ---- <u>목적</u>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u>변경 전에</u>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같은 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u>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15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삭제>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3.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삭제>
14. ~ 18. (생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제60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삭제>
20. ~ 22. (생략)	20. ~ 22. (현행과 같음)
23. 제7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삭제>
24. ~ 32. (생략)	24. ~ 32. (현행과 같음)
33. 제107조에 따른 차령 연장	<삭제>

주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 ----- ----- ----- ----- ----- ----- ----- ----- ----- ----. <u>이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또는 폐지 통보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생략) <신설>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u>	④ <u>제3항</u> -----

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u> 3.·4. (생략) 5. <u>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u>	----- ----- ----- ----- ----- -----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4.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 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 <u>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u> <u>1일</u>	<u><삭 제></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 ----- ----- ----- ----- ----- ----- <u>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생략)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③ ----- ----- ----- ----- ----- -----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제출</u>하여야 한다. 1.·2. (생략) ④ (생략)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략) 5. <u>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 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017 년 1월 1일</u>	----- <u>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 함한다)---</u>.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	---